

# 광주·전남 일부 수제담배 판매점 편법영업

### 개인이 구매해 만들어 피우면 합법...완제품 팔면 불법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 몰려...애매한 법 기준 단속 한계

광주·전남지역 내 일부 '수제담배 판매점'들이 불·편법 운영을 일삼으면서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제담배'는 개인이 담뱃잎과 종이 등을 재료를 산 뒤 직접 만들어 피우어야 하는 데도, 이들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에 완성형 제품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농산물로 구분돼 있는 담뱃잎의 경우 청소년이 구입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려 나이 구분없이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에 담뱃갑 겉면에는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혐오스러운 사진과 문구 대신 '천연 담뱃잎, 발암성 물질 없음' 등의 문구와 함께 화려한 색상에 아기자기한 캐릭터까지 삽입해 소비자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23일 담배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수제담배 판매점 20여곳이 성업 중이다.

1갑당 2500원 수준인 수제담배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가 판매금액을 올린 틈을 타 흡연가의 결을 파고들고 있다.

광주 도심 곳곳에는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수제담배 판매점과 일반 소규모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담뱃잎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노려 일반 담뱃값의 55.5% 수준인 1갑당 2500원에 수제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광주 한 수제담배 판매점도 매장 앞에 '1갑 2500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을 세워놓고 애연가를 유인하고 있었다.

16㎡(5평)규모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담뱃잎을 담아놓은 봉지와 종이담배(케이스), 담배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기계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담배종류는 니코틴 함량 등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돼 있었으며, 일반담배 기준 니코틴 함량은 0.10mg, 0.50mg, 1.00mg과 바카향을 판매했다.



광주지역의 한 업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수제담배.

이 업소는 1갑당 2500원인 '수제담배'를 200개포 단위(2만5000원)로만 판매했으며, 추가 요금을 각각 2000원씩 내면 일반 담배처럼 20개포씩 넣을 수 있는 담뱃갑과 고급필터도 제공하고 있다.

담뱃갑 겉 표면에는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일반 담뱃갑에 부착된 혐오스러운 사진과 문구 등도 없어 애연가들에게 인기만점이라는 게 업주의 설명이다.

수제담배의 경우 담뱃잎과 필터를 고르면 손님이 직접 매장 안에서 설치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가 많지 않다는 게 이용 흡연자들의 얘기다.

한 수제담배 업소 관계자는 "담뱃잎을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말려 나오는 구조로, 완성된 담배는 외견상 일반 담배와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200개포 기준으로 담배를 제조할 경우 40분 이상이 소요돼 손님이 미리 예약을 하면 사전에 제조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국내에서 해당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KT&G'와 영국계 회사 'BAT코리아'뿐이다.

KT&G 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수제담배 판매점이 늘어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담배제조행위를 발견하는 대로 구형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수십억 수산물 무자격 도매인에 외상 낙찰

### 수협 직원·위탁판매자 등 적발

어민이 잡은 25억원 어치의 수산물을 자격이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낙찰받게 하고 허위로 거래명세를 작성한 수협직원과 수산물 위탁판매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무자격 도매인인 김모(44)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 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허위로 거래 내용을 입력한 여수 A수협 판매과장 이모(48)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격이 없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위탁판매자 6명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의 범행은 일부 도매인의 수산물 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수협의 고소로 들통이 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난해 7월 수협 도매인 자격을 상실한 김씨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이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다른 도매인의 명의를 빌린 뒤 358회 걸쳐 경매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챙겼다.

또 A수협의 판매과장인 이씨는 수협에 입금해야 할 미수금이 늘어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로 거래명세를 조작해 수산물 대금인 13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용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수협은행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이씨와 김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커피 한잔 하자" 수면제 먹고 금품 훔친 여성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철도 등의 혐의로 이모(여·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한 모텔에서 A(49)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뒤 잠이 들자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금은방에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3번인 이씨는 과거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인 A씨와 같은 모텔에서 지내왔으며 A씨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자신의 객실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골절 사고를 당해 광주 모 병원에서 2주간의 입원 치료를 해오던 중 불면증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수면제가 든 커피 컵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성분분석을 의뢰해 이씨를 붙잡았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아파트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국민청원 13만명 돌파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 부모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국민청원 시작 8일 만에 1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후 8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13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4일 대전의 현직 소방관 부부가 시작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대전 서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A양은 소풍을 하러 앞두고 엄마와 함께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한 승용차가 A양 모녀를 덮쳤고, A양은 사망하고 A양 엄마는 크게 다쳤다. 이 부부는 청원에서 "119 구급대원이 직접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당시를 잊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으며, 눈을 감아도 그날 현상이 떠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응급처치 이렇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23일 광주시 매곡동 전남지사 합동강의실에서 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삼각건을 활용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범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소1부(구장모 부장판사)는 23일 A(52)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급정차하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에 총출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

외"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시간은 동이 뜨기 직전으로 차량의 전조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라 완전히 어두운 야간보다 오히려 전방 주시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지켰더라도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검찰에 사건 청탁해줄게" 돈받은 변호사 영장 청구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수임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해 사건 의뢰인으로

부터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성공보수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감독이 너무해...씨름선수단에 지원된 돈 유출비로 탕진

○...선수들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유출비로 탕진한 전북의 한 씨름단 감독이 경찰서행.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씨름단 창단 감독인 A(50)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씨름 선수 11명에게 훈련비와 식

비, 목욕비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1500여만원을 유출비로 탕진했다는 것.

○...A씨는 선수 1명당 1일 3만원씩 지원되는 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겼는데, 경찰에서 "지원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